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408호 2020년 2월 13일(목)

경 상 북 도

■ 훈 령

○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경상북도 훈령 제1571호) ····· 6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고 시

○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39호) ····· 11

○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40호) ····· 16

○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41호) ····· 19

○ 도지정문화재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42호) ····· 22

■ 공 고

○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의견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284호) ····· 25

○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303호) ····· 28

○ 2020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시행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306호) ····· 32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317호) ····· 34

시 군

■ 고 시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0-31호) ····· 68

○ 문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0-17호) ····· 70

○ 문경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0-18호) ····· 91

■ 공 고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공고 제2020-201호) ····· 94

○ 문경시 공인 폐기 공고
(문경시 공고 제2020-358호) ····· 99

○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2020-198호) ····· 101

기 타

■ 고 시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일부준공 인가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호) ····· 192

◈◈◈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2월 13일

경상북도 훈령 제1571호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자리청년정책관”를 “일자리경제노동과”로, “사회적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국제통상과”를 “외교통상과”로, “농촌개발과”를 “농촌활력과”로, “노인효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균형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공무원교육원”를 “인재개발원”으로, “총무과”를 “총무민원실”로, “수산자원연구소”를 “수산자원 연구원”으로, 같은 표 수산자원연구원(종전의 수산자원연구소)란 중 “본소”를 “본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598	98	488	11	1	

별표 1 중 본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	163	53	110			

별표 1의 본청 중 외교통상과(종전의 국제통상과)란 다음에 과학기술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과학기술정책과	1	1				

별표 1의 본청 중 자치행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행정과	10	10				

별표 1의 본청 중 회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과	96	3	93			

별표 1의 본청 중 청사운영기획과란을 삭제 한다.

별표 1의 본청 중 문화예술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예술과	3	3				

별표 1의 본청 중 도시재생과(종전의 균형개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재생과	7		7			

별표 1 중 직속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속기관	214	29	185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인재개발원(종전의 공무원교육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재개발원	6	2	4			

별표 1의 직속기관 중 인재개발원의 교육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지원과	5	2	3			

별표 1의 지역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본부	47	3	44			

별표 1의 지역본부 중 총무민원실(종전의 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민원실	4	1	3			

별표 1의 사업소란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	163	11	140	11	1	

별표 1의 사업소 중 산림환경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환경연구원	25	5	20			

별표 1의 사업소 중 산림환경연구원의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부지원	2	1	1			

별표 1의 사업소 중 산림자원개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개발원	31	1	30			

별표 1의 사업소 중 산림자원개발원의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원	25	1	24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고시 제2020-39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농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49.612.7㏊(감 1.0ha)

■ 농업진흥구역 : 124,175.8㏊(감1.0ha)

■ 농업보호구역 : 25,436.9㏊(변동없음)

2. 농업진흥지역 증감 내역

(단위 : ha)

구분	시군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경북도		149,612.7	124,175.8	25,436.9	감1.0
해제	포항시	7,582.6	6,478.1	1,104.4	감1.0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 ≪참고 2≫ 별도 기재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1≫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2020. 2. 13.기준 (단위 : ha)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49,612.7	124,175.8	25,436.9				
포항시	7,582.6	6,478.1	1,104.4	의성군	15,292.5	12,517.2	2,775.3
경주시	10,272.1	8,431.0	1,841.1	청송군	3,873.6	2,956.3	917.3
김천시	7,877.0	6,863.7	1,013.3	영양군	2,223.8	1,898.5	325.3
안동시	7,335.8	6,338.8	997.0	영덕군	3,569.3	3,123.6	445.6
구미시	8,074.2	7,306.2	768.0	청도군	6,120.1	4,375.8	1,744.4
영주시	5,604.9	4,816.2	788.6	고령군	4,342.4	3,982.8	359.6
영천시	10,289.3	7,113.6	3,175.8	성주군	7,193.0	6,005.1	1,187.9
상주시	16,435.7	14,244.0	2,191.7	칠곡군	2,078.8	1,696.5	382.3
문경시	6,128.7	5,015.2	1,113.5	예천군	9,785.8	8,571.9	1,214.0
경산시	5,514.6	3,989.1	1,525.6	봉화군	3,156.1	2,662.9	493.2
군위군	5,023.2	4,287.0	736.2	울진군	1,839.2	1,502.4	336.8

≪참고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 증감일 : 2020. 2. 13.

(단위 : ha)

시군	구분	위 치	사 유	증감면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3	△1.0	-	-
포항시	해제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304번지 외 12필지	포항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연일읍 다목적체육관) 결정(변경)	△13	△1.0	-	-
		이 하	여 백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1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04	답	1,488	농업진흥구역	1,488	
2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04-1	답	1,487	농업진흥구역	1,487	
3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05-1	답	1,488	농업진흥구역	1,488	
4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05-2	답	1,488	농업진흥구역	1,488	
5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14-18	답	216	농업진흥구역	216	
6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14-19	답	500	농업진흥구역	500	
7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15-2	답	778	농업진흥구역	778	
8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15-3	답	247	농업진흥구역	247	
9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15-22	전	248	농업진흥구역	248	
10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15-23	전	822	농업진흥구역	822	
11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15-24	답	188	농업진흥구역	188	
12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315-25	답	50	농업진흥구역	50	
13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427	구	597	농업진흥구역	597	
합 계						9,597		9,597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40호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검진)·주사·투약(구제)을 실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목적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검사, 주사, 투약을 실시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아 농가피해를 막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2. 실시지역 : 도내 전지역

3. 대상가축 및 질병의 종류

가. 예방주사

○ 소 : 구제역, 탄저·기종저 혼합,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설

사병, 부제병

○ 돼지 : 구제역, 돼지열병·단독, 돼지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돼지써코바이러스

○ 염소, 사슴 : 구제역

○ 닭 : 뉴캣슬병

○ 개 : 광견병

나. 검 진 : 소 결핵병, 소 브루셀라병, 사슴결핵, 돼지 오제스키병,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닭뉴캣슬병, 닭추백리, 조류인플루엔자

다. 투약(구제) : 꿀벌응애, 꿀벌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4. 실시기간 : 2020. 2. 11일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

5. 기타

가. 동물방역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예방접종 및 검진을 실시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과 검진 및 투약실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구제역 예방주사

○ 예방접종 방법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20.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 주의사항 :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아래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경상북도 고시 제2020- 41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온압보정계수 개념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보정계수

도시가스사별 적용지역 및 보정계수

공급권역	공급회사	온압보정계수	적용지역
제 1 권역	영남에너지서비스㈜_포항	0.9914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 2 권역	영남에너지서비스㈜_구미	0.9911	김천시, 성주군
		0.9932	구미시, 칠곡군
		0.9945	상주시
		0.9930	문경시
		0.9908	청도군
제 3 권역	서라벌도시가스㈜	0.9910	경주시
		0.9893	영천시
제 4 권역	대성청정에너지㈜	0.9907	안동시, 예천군, 군위군, 의성군
		0.9872	영주시, 봉화군

3. 적용범위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가. 사용량(m^3)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3)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고시 제2019-53호, 2019.2.25)(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 고시)는 폐지한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0- 42호

도지정문화재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도보에 고시합니다.

2020. 2.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정해제내용

지정 종별	문화재명	수량	문화재 (보호구역)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자	해제사유 (승격일자)	지 정 해제일
기념물 제1호	은척면의 뽕나무	1주	272㎡ (-㎡)	상주군 농회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외	1972.12. 29	천연기념물 제559호 승격 (2020.2.3)	2020.2.3

2. 지정해제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승격 지정에 따른 경상북도지정문화재 지정 해제

3. 연 락 처

○ 전 화 : 054-880-3177 (FAX 054-880-3179)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284호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의견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사전의견 통지에 대하여 등기우편반송 등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0.2.13. ~ 2020.3.9.(26일간)

2. 공고내용 :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의견 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사회복지법인 경정원 대표이사 최재복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가길 4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목적사업 달성 불가능 2. 목적사업 미이행 3. 시정명령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호 생략)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호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문의사항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사회복지과

(☎ 054-880-3729, FAX 054-88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경상북도 공고 제2020- 303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전통지의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나.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원인	법적근거
㈜대박 종합건설	이갑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본성로 1038-21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주식회사 오성종합건설	조무희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1로1길 17-14, 1동 503호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원인	법적근거
미주건설(주)	김동학	경상북도 영천시 장천3길 28-14(조교동)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상일건설 주식회사	박봉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41, 2층(양덕동)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다우 종합건설	김청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602, 104동 201호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

라. 의견제출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마. 의견제출 기한 : 2020년 2월 28일(금) 까지

2.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 도시계획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306호

2020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시행 공시송달 공고

2020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폐문부재,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목 : 2020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시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공시송달 명세서

시군	편입 지역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사업기간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포항	포항 기북 대곡	산78-3	임	177,818	1,077	2020.02~10월	김○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	2012~ 2013년 신설
경주	경주 서면 도리	산32-1	임	619,245	7,269	2020.02~10월	김○래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	2003년 신설
							고○자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	
							김○원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 ○아파트 ○-○	
							김○희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	
영천	영천 화남 죽곡	산272	임	36,496	23	2020.02~10월	박○근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번지 ○지구 ○단지 ○아파트 ○-○	1993~ 1995년 신설
경산	경산 남산 사림	산97	임	32,926	231	2020.02~10월	강○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길 ○○, ○호 (○○동)	1998년 신설
영덕	영덕 달산 메일	891	전	1,947	41	2020.02~10월	박○원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길 ○○-○	1995~ 1996년 신설
청도	청도 각남 옥산	산282	임	49,190	32	2020.02~10월	강○덕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	1997년 신설
울진	울진 근남 행곡	산21	임	407,306	3,022	2020.02~10월	천전○○림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	2000~ 2001년 신설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317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소방인력 강화 계획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배분 협약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

○ (경제부지사) 동해안정책, 해양수산 등 환동해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기구 조정(안 제5조)

○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

다. 소방서의 위치 조정[별표2]

○ 김천소방서 : 김천시 강변로 219

○ 경산소방서 :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목적 추가 및 관련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정원의 총수 : 7,036명 → 7,494명(증 458명)

○ 집행기관 정원 : 2,240명 → 2,239명(△1)

○ 소방공무원 정원 : 4,636명 → 5,095명(+459)

○ 교육공무원 정원 : 43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 정원 : 117명(변동없음)

다. 정원 변동내역

○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보강 : 19명

• 소방직 : 소방령 이하 19

○ 소방관서 현장활동 부족인력 보강 : 440명

• 소방직 : 소방령 이하 440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협약에 따른 정원 조정 : △1명

• 일반직 : 1급(청장) △1, 3급 △1, 4급 1

라.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공무원 : 2,069명 → 2,068명(△1명)

• 1급 : 1명 → 0명(△1)

• 2급 : 1명(변동없음)

• 2~3급 : 2명(변동없음)

• 3급 : 13명 → 12명(△1)

• 3~4급 : 2명(변동없음)

• 4급 : 93명 → 94명(+1)

• 5급 이하 : 1,943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4명(변동없음)

○ 별정직 공무원 : 17명(변동없음)

○ 연구직 : 240명(변동없음)

○ 지도직 : 30명(변동없음)

○ 소방직 공무원 : 4,636명 → 5,095명(+459명)

• 소방정 : 24명(변동없음)

• 소방령 이하 : 4,612명 → 5,071명(+459)

○ 교 원 : 43명(변동없음)

마.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37,228,113천원

○ 소방직 81,107천원 × 459명 = 37,228,113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20년 기준인건비 공무원 1인당 단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yim324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2123 Fax)054-880-2149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수요 증가지역의 소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방서 위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

○ (경제부지사) 동해안 정책, 해양수산 등 환동해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기구 조정(안 제5조)

○ (소방본부) 행정부지사 직속 → 도지사 직속

다. 소방서의 위치 조정 [별표2]

○ 김천소방서 : 김천시 강변로 219

○ 경산소방서 :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9조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5.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해안 정책, 해양수산 등 환동해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 및 건설도시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술지원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지원국장”을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민생본부장ㆍ인재개발정책관”을 “과학산업국장ㆍ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업무 담당사무관”을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⑧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 단서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각각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지역균형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과장”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 중 “교육원장” 을 “인재개발원장” 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교육원” 을 “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원” 을 각각 “인재개발원” 으로, “교육원장” 을 각각 “인재개발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원장” 을 “인재개발원장” 로 한다.

⑮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입법정책관” 을 “입법정책담당관” 으로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강변로 219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상산로 322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경산시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청도소방서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청도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예천소방서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예천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지사) ① · ② (생 략)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제5조(실 · 국 · 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 재난안전실 · 일자리경제실 · 과학산업국 · 아이여성행복국 · 자치행정국 · 문화관광체육국 · 농축산유통국 · 환경산림자원국 · 복지건강국 ·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신 설〉	제4조(부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동해안 정책, 해양수산 등 환동해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제5조(실 · 국 · 본부의 설치) ① ---------- ---------- ---------- ---------- ---------- 및 건설도시국--------.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장사무 신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수반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 성 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배분 협약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목적 추가 및 관련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정원의 총수 : 7,036명 → 7,494명(증 458명)

○ 집 행 기 관 정원 : 2,240명 → 2,239명(△1)

○ 소방공무원 정원 : 4,636명 → 5,095명(+459)

○ 교육공무원 정원 : 43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 정원 : 117명(변동없음)

다. 정원 변동내역

○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보강 : 19명

• 소방직 : 소방령 이하 19

○ 소방관서 현장활동 부족인력 보강 : 440명

• 소방직 : 소방령 이하 440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협약에 따른 정원 조정 : △1명

• 일반직 : 1급(청장) △1, 3급 △1, 4급 1

라.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공무원 : 2,069명 → 2,068명(△1명)**

• 1급 : 1명 → 0명(△1)

• 2급 : 1명(변동없음)

• 2~3급 : 2명(변동없음)

• 3급 : 13명 → 12명(△1)

• 3~4급 : 2명(변동없음)

• 4급 : 93명 → 94명(+1)

• 5급 이하 : 1,943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4명(변동없음)

○ **별정직 공무원 : 17명(변동없음)**

○ **연구직 : 240명(변동없음)**

○ **지도직 : 30명(변동없음)**

○ **소방직 공무원 : 4,636명 → 5,095명(+459명)**

• 소방정 : 24명(변동없음)

• 소방령 이하 : 4,612명 → 5,071명(+459)

○ **교 원 : 43명(변동없음)**

마.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37,228,113천원

○ 소방직 81,107천원 × 459명 = 37,228,113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20년 기준인건비 공무원 1인당 단가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련법령 확인하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5.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공무원 정원”으로, “7,036명”을 “7,4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40명”을 “2,23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636명”을 “5,09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별표 2의 제목 및 별표 3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9% 이내	33% 이내	36% 이내	5%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7명(4급 1, 5급 1, 6급 2, 7급 3)은 제외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38% 이내	62%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 · 9급상당
비 율	25% 이내	55% 이내	-	18% 이내	2%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9% 이내	16% 이내	30% 이내	33% 이상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경제자유구 역 청
합 계		7,494	–					
정 무 직		1	–					
일반직	소 계	2,068	–					
	2급	1				1		
	2 ~ 3급	2	1	1				
	3 급	12	9		1	2		
	3 ~ 4급	2	2					
	4급	94	62	8	5	9	9	1
	5급 이하	1,943	–					
	전문경력관	14	–					
별정직	소 계	17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3	–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연구직	소 계	240	–					
	연구관	44			43		1	
	연구사	196	–					
지도직	소 계	30	–					
	지도관	10			10			
	지도사	20	–					
소방직	소 계	5,095	–					
	소방정	24	5		19			
	소방령 이하	5,071	–					
교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3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240명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4,636명 3.·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공무원 정원------7,494명------. 1. ---------- 2,239명 2. ---------- 5,095명 3.·4.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 ②----------공무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공무원 ----------. ---------- ---------- ----------.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공무원---------- ---------- ---------- ----------.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항 (생 략)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⑤항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항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항 (생 략)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부족인력을 확충(안 제2조)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1)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494명으로 한다.

(단위 : 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036	7,494	+458	
집행기관의 정원	2,240	2,239	△1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636	5,095	+459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3	4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7	117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한다.

나.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도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2020년 372억 28백만원을 비롯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968억 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0~2024년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방직	196,860,414	37,228,113	38,270,500	39,342,074	40,443,652	41,576,075

※ 2020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및 연도별 보수인상율 2.8%를 적용하여 산정

4. 부대의견

2020년도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매년 보수인상율은 2020년도 보수인상율 2.8%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 성 현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 상

-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부족인력 인력보강 459명

나. 방 법

〈 비용 추계 방법 〉

소요비용 : 1인당 인건비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

2. 공무원 정원의 총수(개정안 제2조)

가. 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고려사항 : 비용추계 범위에 대한 가정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매년 보수인상율 등에 따라 운영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매년 인상되는 보수인상율은 2020년도 기준인 2.8%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실제 연도별 소요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공무원 1인당 인건비 : 2020년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직	소 방 직	비 고
인 건 비	86,074	81,107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이상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도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968억 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비 추정 : 2020~2024년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방직	196,860,414	37,228,113	38,270,500	39,342,074	40,443,652	41,576,075

※ 2020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및 연도별 보수인상율 2.8%를 적용하여 산정

* 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2020년도는 2020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근거로 추정하고, 2021 ~ 2024년도는 2020년도 보수인상율(2.8%)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정 경비는 실제 연도별 운영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주시 고시 제2020 - 31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상 주 시 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티에프컴

○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상주시청)

3. 점용의 위치 및 면적

하 천 명	점용의 위치	점용면적
낙동강 (국가하천)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170번지 외 8필지	1,59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BMW 모토라드 시즌 오프닝 투어 행사를 위한 점용

○ 개 요 : 행사부스 설치(5.0m×5.0m) 17동

테이블 설치(30.0m×30.0m) 1개소

5. 점용기간

○ 2020년 2월 28일 ~ 2020년 2월 29일 까지 (2일간)

문경시 고시 제2020 - 17호

문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중 문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을 하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문 경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변경)

사 업 의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문경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	170,941.1	증)2.0	170,943.1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문경시

나. 주 소 : 문경시 당교로 225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가. 사업의 목표 (변경없음)

○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경새재, KBS드라마 촬영장, 문경온천, 전통도예지, 활공랜드, 석탄박물관 등 문화유적과 최근 관광·여가산업의 변화추세에 따라 명상휴양지의 건립을 통한 복합문화산업의 경제적 고부가 가치 창출로 웰빙산업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 등의 민간분야 참여와 함께 관련 연구단체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 (변경)

○ 사 업 면 적 : 170,941.1㎡ → 170,943.1㎡ 증)2.0㎡

◦ 관광휴양시설용지 : 32,550.3㎡

◦ 공 공 시 설 용 지 : 21,064.0㎡ → 20,939.0㎡ 감)125.0㎡

◦ 녹 지 용 지 : 117,326.8㎡ → 117,453.8㎡ 증)127.0㎡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0. 12. (변경)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변경)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경시 건축디자인과(054-550-6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연번	주소			지목	면적(㎡)				소 유 권	
	읍	리	지번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70,943.1	170,941.1	증)2.0	170,943.1	-	-
1	문경읍	고요리	1050	주차장	3,698.1	3,698.1	-	3,698.1	문경시	-
2	문경읍	고요리	1051	공원	649.5	649.5	-	649.5	문경시	-
3	문경읍	고요리	1052	주차장	2,984.7	2,984.7	-	2,984.7	문경시	-
4	문경읍	고요리	1053	대	1,775.5	1,775.5	-	1,775.5	문경시	-
5	문경읍	고요리	1054	대	1,377.4	1,377.4	-	1,377.4	문경 ****	문경시 마성면
6	문경읍	고요리	1055	주차장	1,126.6	1,126.6	-	1,126.6	문경시	-
7	문경읍	고요리	1056	공원	4,499.4	4,499.4	-	4,499.4	문경시	-
8	문경읍	고요리	1057	공원	117.8	117.8	-	117.8	문경시	-
9	문경읍	고요리	1058	대	1,710.0	1,710.0	-	1,710.0	문경시	-
10	문경읍	고요리	1059	대	2,002.7	2,002.7	-	2,002.7	문경시	-

연번	주소			지목	면적(㎡)				소 유 권	
	읍	리	지번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기정	변경	변경후		
11	문경읍	고요리	1060	대	1,998.6	1,998.6	-	1,998.6	문경시	-
12	문경읍	고요리	1061	대	1,680.3	1,680.3	-	1,680.3	문경시	-
13	문경읍	고요리	1062	도로	389.2	389.2	-	389.2	문경시	-
14	문경읍	고요리	1063	대	9,980.0	9,980.0	-	9,980.0	문경 ****	문경시 마성면
15	문경읍	고요리	1064	대	714.0	714.0	-	714.0	홍**	문경시 마성면
16	문경읍	고요리	1065	대	627.0	627.0	-	627.0	홍**	문경시 마성면
17	문경읍	고요리	1066	대	568.0	568.0	-	568.0	홍**	문경시 마성면
18	문경읍	고요리	1067	대	627.0	627.0	-	627.0	이**	문경시 마성면
19	문경읍	고요리	1068	대	739.0	739.0	-	739.0	-	-
20	문경읍	고요리	1069	대	517.0	517.0	-	517.0	변**	서울특별시 서초구
21	문경읍	고요리	1070	대	710.0	710.0	-	710.0	변**	서울특별시 서초구
22	문경읍	고요리	1071	대	577.0	577.0	-	577.0	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번	주소			지목	면적(㎡)				소 유 권	
	읍	리	지번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기정	변경	변경후		
23	문경읍	고요리	1072	대	622.0	622.0	-	622.0	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4	문경읍	고요리	1073	대	563.0	563.0	-	563.0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25	문경읍	고요리	1074	대	623.0	623.0	-	623.0	유**외1	문경시 문경읍
26	문경읍	고요리	1075	대	744.0	744.0	-	744.0	이**외1	문경시 영신영강길
27	문경읍	고요리	1075-1	대	664.8	664.8	-	664.8	이**외1	문경시 영신영강길
28	문경읍	고요리	1076	대	623.0	623.0	-	623.0	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29	문경읍	고요리	1077	대	563.0	563.0	-	563.0	최**외1	서울특별시 동작구
30	문경읍	고요리	1078	대	624.0	624.0	-	624.0	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31	문경읍	고요리	1079	대	561.0	561.0	-	561.0	강**	문경시 문경읍 활공장길
32	문경읍	고요리	1080	대	624.0	624.0	-	624.0	강**	문경시 문경읍 활공장길
33	문경읍	고요리	1081	대	735.0	735.0	-	735.0	강**	문경시 문경읍 활공장길

연번	주소			지목	면적(㎡)				소유권	
	읍	리	지번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기정	변경	변경후		
34	문경읍	고요리	1082	공원	11,415.1	11,415.1	-	11,415.1	문경시	-
35	문경읍	고요리	1083	도로	7,943.1	7,943.1	-	7,943.1	문경시	-
36	문경읍	고요리	1084	도로	4,472.3	4,472.3	-	4,472.3	문경시	-
37	문경읍	고요리	산85	임야	99,067.0	99,390.0	감)323.0	99,067.0	문경시	-
38	문경읍	고요리	산88-3	임야	1,705.0	1,705.0	-	1,705.0	문경시	-
39	문경읍	고요리	1082-2	도로	188.0	-	증)188.0	188.0	문경시	-
40	문경읍	고요리	1082-1	수도용지	137.0	-	증)137.0	137.0	문경시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0,941.1	증)2.0	170,943.1	100.0	
계획관리지역	170,941.1	증)2.0	170,943.1	100.0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문경명 상웰빙 타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	170,941.1	증)2.0	170,943.1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면 적(㎡)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6	1,236	13,104.6	-	-	-	-	-	-	6	1,236	13,104.6
	변경	6	1,234	12,992.6	-	-	-	-	-	-	6	1,234	12,992.6
중로	기정	4	957	12,395.4	-	-	-	-	-	-	4	957	12,395.4
	변경	4	957	12,084.7	-	-	-	-	-	-	4	957	12,084.7
소로	기정	2	279	709.2	-	-	-	-	-	-	2	279	709.2
	변경	2	277	907.9	-	-	-	-	-	-	2	277	907.9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3	집산도로	188	고요리 1084	고요리 1084	일반도로	-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기정	중로	3	2	13	집산도로	143	고요리 1084	고요리 1084	일반도로	-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기정	중로	3	3	13	집산도로	92	고요리 1083	고요리 1083	일반도로	-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534	고요리 1083	고요리 1083	일반도로	-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변경	중로	3	4	12	집산도로	534	고요리 1083	고요리 1083	일반도로	-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일부구간 폭원 확장 (L=25m, B=11→12m)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52	고요리 1083	고요리 산85	일반도로	-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변경	소로	3	1	4	국지도로	150	고요리 1083	고요리 1082-2	일반도로	-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127	고요리 1083	고요리 1084	보행자전용도로	-	-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고요리 1050번지 일원	3,698.1	-	3,698.1	2008.2.4 문경시고시 제2008-6호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주차장	고요리 1052번지 일원	2,984.7	-	2,984.7	2008.2.4 문경시고시 제2008-6호	
기정	3	주차장	고요리 1055번지 일원	1,126.6	-	1,126.6	2008.2.4 문경시고시 제2008-6호	

2)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배수지	고요리 산85번지 일원	고요리 1082-1 번지	150	감)13	137	2008.2.4 문경시 고시 제2008-6호	

다.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70,941.1	증) 2.0	170,943.1	100.0	
관광휴양시설	소 계	32,550.3	-	32,550.3	19.0	
	전통문화체험관	1,680.3	감) 1,680.3	-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지	웰빙정보전시관	1,998.6	감) 1,998.6	-	-	
	웰빙클리닉센터	2,002.7	감) 2,002.7	-	-	
	명상체험센터	1,710.0	감) 1,710.0	-	-	
	판매소	1,775.5	-	1,775.5	1.1	
	건강식 레스토랑	1,377.4	-	1,377.4	0.8	
	콘도미니엄	9,980.0	증) 7,391.6	17,371.6	10.1	
	팬션타운	12,025.8	-	12,025.8	7.0	
공공시설용지	소 계	21,064.0	감) 125.0	20.939.0	12.3	
	배수지	150.0	감) 13.0	137.0	0.1	
	주차장	7,809.4	-	7,809.4	4.6	
	도로	12,715.4	감) 112.0	12,603.4	7.4	
	보행로	389.2	-	389.2	0.2	
녹지용지	소 계	117,326.8	증) 127.0	117,453.8	68.7	
	원지형보전녹지	102,584.3	증) 72.0	102,656.3	60.0	
	기타녹지	14,742.5	증) 55.0	14,797.5	8.7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2,700.3	감)13.0	32,687.3	-	-	32,700.3	감)13	32,687.3	
1 BL	3,152.9	-	3,152.9	소계	-	3,152.9	-	3,152.9	
				1-1	고요리 1054번지 일원	1,377.4	-	1,377.4	건강식 레스토랑
				1-2	고요리 1053번지 일원	1,775.5	-	1,775.5	판매소
2 BL	7,391.6	-	7,391.6	소계	-	7,391.6	-	7,391.6	
				2-1	고요리 1058번지 일원	1,710.0	감) 1,710.0	-	명상체험 센터
				2-2	고요리 1059번지 일원	2,002.7	감) 2,002.7	-	웰빙클리닉센터
				2-3	고요리 1060번지 일원	1,998.6	감) 1,983.6	-	웰빙정보 전시관
				2-4	고요리 1061번지 일원	1,680.3	감) 1,680.3	-	전통문화 체험관

가 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2-1	고요리 1058번지 일원	-	증) 7,391.6	7,391.6	콘도 미니엄
3 BL	13,255.0	-	13,255.0	소계	-	13,255.0	-	13,255.0	
				3-1	고요리 1063번지 일원	9,980.0	-	9,980.0	콘도 미니엄
				3-2	고요리 1068번지 일원	739.0	-	739.0	펜션
				3-3	고요리 1067번지 일원	627.0	-	627.0	펜션
				3-4	고요리 1066번지 일원	568.0	-	568.0	펜션
				3-5	고요리 1065번지 일원	627.0	-	627.0	펜션
				3-6	고요리 1064번지 일원	714.0	-	714.0	펜션
4 BL	8,750.8	-	8,750.8	소계	-	8,750.8	-	8,750.8	
				4-1	고요리 1069번지 일원	1,227.0	-	1,227.0	펜션

가 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4-3	고요리 1071번지 일원	577.0	-	577.0	펜션
				4-4	고요리 1072번지 일원	622.0	-	622.0	펜션
				4-5	고요리 1073번지 일원	563.0	-	563.0	펜션
				4-6	고요리 1074번지 일원	623.0	-	623.0	펜션
				4-8	고요리 1075번지 일원	1,408.8	-	1,408.8	펜션
				4-9	고요리 1076번지 일원	623.0	-	623.0	펜션
				4-10	고요리 1077번지 일원	563.0	-	563.0	펜션
				4-11	고요리 1078번지 일원	624.0	-	624.0	펜션
				4-12	고요리 1079번지 일원	561.0	-	561.0	펜션

가 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4-13	고요리 1080번지 일원	624.0	-	624.0	펜션
				4-14	고요리 1081번지 일원	735.0	-	735.0	펜션
5 BL	150.0	감)13.0	137.0	소계	-	150.0	감)13.0	137.0	
				5-1	고요리 1082-1번지 일원	150.0	감)13.0	137.0	배수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결정(변경)사유
1-1	문경읍 고요리 105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D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지형을 따라 임의 배치
		형 태		-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결정(변경)사유
		건축선		-
1-2	문경읍 고요리 105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C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지형을 따라 임의 배치
		형 태		-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2-1	문경읍 고요리 105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E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기 정	4층 이하
			변 경	5층 이하
		배 치		지형을 따라 임의 배치
		형 태		-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결정(변경)사유
3-1	문경읍 고요리 106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B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지형을 따라 임의 배치
		형 태		-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3-3~3-6 4-1 4-3~4-6 4-9~4-14	문경읍 고요리 106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지형을 따라 임의 배치
		형 태		-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3-2 4-8	문경읍 고요리 107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결정(변경)사유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지형을 따라 임의 배치
		형 태		-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5-1	문경읍 고요리 1082-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G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지하1층
		배 치		지형을 따라 임의 배치
		형 태		-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 건축물의 허용용도

구분	용 도		
A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을 제외한 시설	권장용도	펜션
B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콘도미니엄
C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해당하는 시설		판매소

구분		용 도		
D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과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강식 레스토랑
변경	E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콘도미니엄, 전시관
폐지	F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웰빙클리닉센터
G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5조(수도공급설비) 제1호 배수시설	지정용도	배수지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차량 진·출입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사업대상지 내부	차량진출입구간 2개소	• 사업대상지 진출입도로 - 주출입도로 : 폭13.0m - 부출입도로 : 폭12.0m

나) 보행자 진·출입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사업대상지 내부	사업대상지내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보도를 설치하고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	• 보도 : 폭 2.5m~4m • 횡단보도 : 7개소 설치

다) 진·출입구 교차로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사업대상지 내부	사업대상지 진·출입구 교차로 및 점멸신호등 설치 운영	• 점멸신호등 : 1개소 설치
	사업대상지 내부	사업대상지 주출입구 교차로에 완화차로 설치	• 감속차로:폭3.5m, 연장75.0m • 가속차로:폭3.0m, 연장85.0m

라) 교통안전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사업대상지 내부	경사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 : 100.0m
	사업대상지 내부	주요교차지점에 고원식교차로 및 과속방지턱 설치	• 고원식교차로 : 1개소 • 과속방지턱 : 3개소
	사업대상지 내부	진·출입구 2곳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경사구간곡선부에 반사경 설치	• 안내표지판 : 2개소 • 반사경 : 3개소

문경시 고시 제2020- 18호

문경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4번지 일원의 단산모노레일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문 경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궤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궤도(단산 모노레일)	고요리 산89-4	고요리 산79-2	고요리 산84	2,035.0	27,923.0	2016.03.03 (문경 고시 제19호)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2	궤도 (단산 모노레일)	고요리 산89-4	고요리 산79-2	고요리 산84	2,035.0	29,217.0	2016.03.03 (문경 고시 제19호)	경미한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2	궤도 (단산 모노레일)	· 궤도 면적 변경 L=2,035.0m A=27,923.0㎡→29,217.0㎡ 증) 1,294.0㎡	· 모노레일 부대시설(상부승강장 진출입 데크) 설치를 고려하여 변경된 설계계획을 반영

3.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영천시 공고 제2020 - 201호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완산동 1069-1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3.

영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람장소 : 영천시 도시계획과 (☎ 054-330-6328)

3.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완산동 1069-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 영천시 완산동 1069-16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2-6、2-5호선) 사업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완산동(단위농협앞)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내용

- 사업량 : 도로개설(소로2-6、2-5호선) L=146m, B=8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영천시 (영천시장)

2)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22.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공람장소에 비치)

아.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끝.

○ **편입토지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완산동	1082-47	대	46	46	국	영천시				
2	완산동	1082-46	대	101	101	국	영천시				
3	완산동	1080-16	대	53	53	국	영천시				
4	완산동	1080-5	도	76	76	최병상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97-4				미등기
5	완산동	1080-17	대	157	157	국	영천시				
6	완산동	1076-6	도	40	40	국	영천시				
7	완산동	1077-8	도	142	142	조용화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77				
8	완산동	1077-20	대	59	59	국	영천시				
9	완산동	1077-19	대	57	57	국	영천시				
10	완산동	1079-4	도	274	274	이상룡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19				
11	완산동	1079-39	대	51	51	국	영천시				
12	완산동	1079-37	대	11	11	국	영천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3	완산동	1079-38	대	66	66	국	영천시				
14	완산동	1079-22	대	60	6	이찬우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79-1				
15	완산동	1079-20	대	93	93	국	영천시				
16	완산동	1078-2	대	17	17	국	영천시				
17	완산동	1300-12	구	14	14	국	건설부				
18	완산동	1069-16	대	33	33	김정희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350-1 청구타운 103 -2001	영천 신용 협동 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 76 (완산동)	근저 당권	
19	완산동	1069-25	대	14	14	이옥희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 56-1 (완산동)				

○ **물건등의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성명	주소
1	완산동	1069-16	1층 상가	조적조슬라브	64	㎡	김정희	경북 영천시 야사동 350-1 청구타운 103-2001
			2층 상가	조적조슬라브	64	㎡		
			영업손실	영천비너스	1	식		
2	완산동	1069-25	1층 상가	조적조슬라브	50	㎡	이옥희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 56-1 (완산동)
			2층 상가	조적조슬라브	50	㎡		
			3층 창고	철골조판넬	43	㎡		
			영업손실	비버리힐스 폴로클럽	1	식		

문경시 공고 제2020-358호

문경시 공인 폐기 공고

문경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3.

문 경 시 장

□ **폐기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원회 명칭 변경

□ **폐 기 일**: 2020. 2. 5.

□ **폐기 공인명**

폐기 공인명	인 영	서체·규격	비 고
문경시정신 보건심의 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1cmx2.1cm	

폐기 공인명	인 영	서체·규격	비 고
문경시정신 보건심판 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1cmx2.1cm	

예천군 공고 제2020-198호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호명면 일원 도청신도시(1단계) 내 경북일고등학교 시설 확장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예 천 군 수

1. 계획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신도시(1단계) 일원

나.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 공간시설 : 공원(3호 근린공원)

- 면적 : 131,343.9㎡ → 128,246.9㎡(감 3,097㎡)

- 공원조성계획 변경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경북일고등학교)

- 면적 : 18,013.5㎡ → 21,110.5㎡(증 3,097㎡)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등

2. 공람기간 : 2020. 2. 13. ~ 2020. 3. 2.(14일 이상, 공휴일 제외)

3. 공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면제출

6.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구역)

2020. 2

예 천 군

- 목 차 -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105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0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06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24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42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50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81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82

Ⅳ.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근린공원3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185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천군 호명면 일원	2,082,054.8	-	2,082,054.8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82,054.8	-	2,082,054.8	100.00	
주거지역	소 계		1,189,686.6	-	1,189,686.6	57.14	
	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721,143.9	-	721,143.9	34.6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1,124.7	-	101,124.7	4.86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131.3	-	246,131.3	11.8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3,887.9	-	373,887.9	17.96	
	준주거지역		468,542.7	-	468,542.7	22.5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상업지역	소계	276,764.2	-	276,764.2	13.29	
	일반상업지역	176,097.6	-	176,097.6	8.46	
	근린상업지역	100,666.6	-	100,666.6	4.83	
녹지지역	소계	615,604.0	-	615,604.0	29.57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15,604.0	-	615,604.0	29.57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	-	636,865.2	-	-		
기정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예천군 호명면 일원	636,865.2	-	-	경고14-96 (2014.3.17)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첨부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84	19,375	473,323.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1	6,038	129,644.2
일반도로	계	57	17,611	453,643.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3	5,868	128,627.4
	광로	1	2,766	143,588.7	–	–	–	1	2,766	143,588.7	–	–	–
	대로	8	6,163	179,767.6	–	–	–	3	2,413	73,722.4	5	3,750	106,045.2
	중로	23	6,111	106,694.4	8	2,288	50,545.0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소로	25	2,571	23,592.5	18	2,093	21,412.5	4	52	432.5	3	426	1,747.5
보행자도로	계	27	1,764	19,680.1	15	1,053	10,547.6	4	541	8,115.7	8	170	1,016.8
	중로	4	541	8,115.7	–	–	–	4	541	8,115.7	–	–	–
	소로	23	1,223	11,564.4	15	1,053	10,547.6	–	–	–	8	170	1,016.8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	50~55	주간선도로	2,76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8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388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3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1,263	광로 2-1(예)	대로 3-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76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1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1	28	집산도로	843	광로 2-1(예)	대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4	28	보조간선도로	145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352	대로 2-2(예)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4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298	광로 2-1(예)	대로 3-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2	21	집산도로	263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3	21	집산도로	281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6	24	집산도로	33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2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401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8	21	집산도로	109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	16	국지도로	199	대로 3-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2	16	국지도로	690	중로 1-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3	16	국지도로	56	대로 3-1(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16	국지도로	135	중로 2-2(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5	16	국지도로	610	중로 1-2(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6	16	국지도로	58	대로 3-2(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7	16	국지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8	16	국지도로	110	중로 2-5(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9	16	국지도로	107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0	16	국지도로	106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1	15	특수도로	143	광로 2-1(예)	중로 2-9(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2	15	특수도로	90	중로 2-9(예)	수변공원 9(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3	15	특수도로	203	광로 2-1(예)	중로 2-10(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4	15	특수도로	105	중로 2-10(예)	수변공원 9(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176	중로 1-4(예)	중로 1-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47	광로 2-1(예)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473	대로 2-2(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769	대로 3-4(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62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54	소로 1-6(예)	소로 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76	소로 1-7(예)	소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85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36	중로 3-2(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70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36	소로 1-14(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89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43	소로 1-13(예)	소로 1-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01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41	소로 1-15(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58	소로 1-16(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01	대로 3-2(예)	경관녹지 2(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44	중로 1-1(예)	중로 2-4(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100	중로 2-2(예)	중로 2-4(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50	광로 2-1(예)	중로 2-2(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65	대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64	중로 2-8(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5	10	특수도로	55	중로 2-8(예)	광장 2(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52	중로 1-2(예)	광장 2(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7	10	특수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8	10	특수도로	41	광로 2-1(예)	중로 3-4(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9	10	특수도로	37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0	10	특수도로	36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1	10	특수도로	148	광로 2-1(예)	근린공원 2(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2012.7.31)	
기정	소로	1	32	10	특수도로	112	중로 1-6(예)	소로 1-49(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5-291(2015.9.4)	
기정	소로	1	33	10	특수도로	48	중로 2-13(예)	중로 1-7(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5-291(2015.9.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1(예)	일반도로		경고12-230(2012.7.31)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2(예)	일반도로		경고12-230(2012.7.3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3(예)	일반도로		경고12-230(2012.7.31)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4(예)	일반도로		경고12-230(2012.7.31)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00	대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8	일반도로		경고12-230(2012.7.31)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3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2	일반도로		경고12-230(2012.7.31)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9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0	일반도로		경고12-230(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25	중로 3-2(예)	대로 3-2(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28	광로 2-1(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31	광로 2-1(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15	중로 1-4(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16	중로 1-2(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25	중로 3-1(예)	대로 3-2(예)	보행자전용도로		경고12-230 (2012.7.31)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553.5	-	22,553.5		
기정	1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4	2,540.8	-	2,540.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1	2,171.8	-	2,171.8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7	2,000.6	-	2,000.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8	2,868.6	-	2,868.6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77	1,396.7	-	1,396.7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	3,248.5	-	3,248.5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	2,396.4	-	2,396.4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5	1,947.4	-	1,947.4	경고12-230 (2012.7.31)	
기정	9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6	1,876.1	-	1,876.1	경고12-230 (2012.7.31)	
기정	10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6	2,106.6	-	2,106.6	경고12-230 (2012.7.31)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57.3	-	5,457.3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4	2,581.5	-	2,581.5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48	2,875.8	-	2,875.8	경고12-230 (2012.7.31)	

)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0,662.8**	**감 3,097**	**317,565.8**		
소 계					**201,149.5**	**감 3,097**	**198,052.5**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13,165.3	-	13,165.3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원	근린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4	56,640.3	-	56,640.3	경고12-230 (2012.7.31)	
변경	**3**	**공원**	**근린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131,343.9**	**감 3,097**	**128,246.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50.9	-	750.9		
기정	1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96	750.9	-	750.9	경고12-230 (2012.7.3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7,890.1	-	7,890.1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2	1,669.3	-	1,669.3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0	3,145.6	-	3,145.6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5	3,075.2	-	3,075.2	경고12-230 (2012.7.31)	
소 계					110,872.3	-	110,872.3		
기정	1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6	9,672.9	-	9,672.9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3	5,653.8	-	5,653.8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5	4,724.5	-	4,724.5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8	4,419.8	-	4,419.8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7	8,393.5	-	8,393.5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9	8,055.2	-	8,055.2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0	58,408.5	-	58,408.5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9	5,238.4	-	5,238.4	경고12-230 (2012.7.31)	
기정	9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8	6,305.7	-	6,305.7	경고12-230 (2012.7.31)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 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3	근린공원	◦ 근린공원 변경 A = 13,1343.9㎡ → 128,246.9㎡ 감)3,097㎡	◦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부지 확보에 따른 근린공원 축소

3)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758.5	-	114,758.5		
소 계					14,925.6	-	14,925.6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33	439.2	-	439.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41	571.2	-	571.2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6	1,073.4	-	1,073.4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8	927.9	-	927.9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6	3,254.4	-	3,25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7	1,900.1	-	1,900.1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8	2,741.9	-	2,741.9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0	4,017.5	-	4,017.5	경고12-230 (2012.7.3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99,832.9	-	99,832.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6 일원	46,959.0	-	46,959.0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1	35,605.0	-	35,605.0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1	5,091.6	-	5,091.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9	7,280.7	-	7,280.7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7	555.4	-	555.4	경고14-96 (2014.3.17)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3	1,262.6	-	1,262.6	경고14-96 (2014.3.17)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9	1,551.6	-	1,551.6	경고14-96 (2014.3.17)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5	1,527.0	-	1,527.0	경고14-96 (2014.3.17)	

4)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57.4	-	257.4		
기정	1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32	64.2	-	64.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40	64.4	-	6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5	64.0	-	64.0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9	64.8	-	64.8	경고12-230 (2012.7.31)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4.0	-	144.0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케이블헤드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6	144.0	-	144.0	경고14-96 (2014.3.17)	

2) 공동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공동구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	1.9	6,459.7	경고14-96 (2014.3.17)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089.5	증 3,097	36,186.5		
소 계					15,076.0	-	15,076.0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	15,076.0	-	15,076.0	경고12-230 (2012.7.31)	
소 계					18,013.5	증 3,097	21,110.5		
변경	1	학교	고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18,013.5	증 3,097	21,110.5	경고12-230 (2012.7.31)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학교 (경북일 고등학교)	◦ 학교시설 변경 A = 18,013.5㎡ → 21,110.5㎡ 증)3,097㎡	◦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부지 확보에 따른 학교시설면적 증가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7	하천	지방하천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0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855-28번지선 내성천(국가) 합류점	9.62 (2.37)	25~110 (38)	524,309 (90,188.8)	경고09-483 (2009.11.5)	송평천

※ ( )는 사업지구내 포함부분임, 지구내 면적 중 하천7은 도로(3,224.6㎡) 포함

2)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493.5	-	16,493.5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2	3,102.8	-	3,102.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2	13,390.7	-	13,390.7	경고12-230 (2012.7.31)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37.9	-	2,537.9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0	2,537.9	-	2,537.9	경고12-230 (2012.7.31)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S=1/5,000) : 첨부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48,897.2	160필지	48,897.2	
소 계		18,970.7	61필지	18,970.7	
D-1	1	4,151.6	1	299.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98.6	
			3	294.2	
			4	291.0	
			5	300.2	
			6	300.5	
			7	298.9	
			8	298.2	
			9	295.9	
			10	294.1	
			11	288.2	
			12	297.5	
			13	297.5	
			14	297.5	
	2	904.3	1	302.5	
			2	299.5	
			3	302.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1,229.5	1	308.0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06.1	
			3	308.6	
			4	306.8	
	4	1,872.8	1	313.6	
			2	312.7	
			3	311.4	
			4	312.8	
			5	311.4	
			6	310.9	
	5	928.4	1	309.4	
			2	310.1	
			3	308.9	
D-1	6	973.8	1	324.2	
			2	324.1	
			3	325.5	
	7	2,598.9	1	326.0	
			2	325.4	
			3	325.3	
			4	324.1	
			5	325.6	
			6	324.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324.5	
			8	323.2	
	8	922.7	1	307.2	
			2	307.2	
			3	308.3	
	9	657.3	1	328.6	
			2	328.7	
	10	2,594.3	1	325.1	
			2	324.8	
			3	325.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4	321.8	
			5	325.2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6	324.6	- 획지분할 불허
			7	324.7	
			8	322.9	
	11	623.9	1	311.9	
			2	312.0	
	12	598.6	1	300.6	
			2	298.0	
	13	914.6	1	306.4	
			2	305.4	
			3	302.8	
소 계		29,926.5	99필지	29,92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2	1	3,118.6	1	310.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09.8	
			3	310.0	
			4	309.7	
			5	309.6	
			6	314.7	
			7	313.8	
			8	313.7	
			9	313.6	
			10	313.5	
	2	1,606.5	1	269.5	
			2	267.2	
			3	267.1	
			4	268.8	
			5	267.2	
			6	266.7	
	3	994.0	1	334.6	
			2	329.1	
			3	330.3	
	4	2,424.1	1	299.7	
			2	298.2	
			3	298.3	
			4	297.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5	307.8	
			6	307.5	
			7	307.8	
			8	307.2	
	5	2,172.5	1	272.7	
			2	270.9	
			3	271.6	
			4	271.5	
			5	272.3	
			6	270.8	
			7	271.5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8	271.2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D-2	6	1,338.2	1	267.7	- 획지분할 불허
			2	267.7	
			3	267.9	
			4	268.1	
			5	266.8	
	7	1,795.6	1	302.1	
			2	301.6	
			3	296.0	
			4	300.2	
			5	300.8	
			6	294.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8	920.0	1	306.1	
			2	306.0	
			3	307.9	
	9	2,596.5	1	325.9	
			2	324.2	
			3	324.5	
			4	325.5	
			5	325.2	
			6	323.4	
			7	323.4	
			8	324.4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10	2,345.6	1	289.6	
			2	287.3	
			3	287.2	
			4	287.3	
			5	300.3	
			6	298.2	
			7	298.3	
			8	297.4	
D-2	11	933.3	1	312.2	
			2	311.6	
			3	309.5	
	12	621.1	1	311.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2	309.8	
	13	2,596.4	1	326.1	
			2	324.3	
			3	324.4	
			4	325.4	
			5	324.7	
			6	323.3	
			7	323.5	
			8	324.7	
	14	2,564.5	1	319.1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17.4	
			3	317.4	
			4	317.5	
			5	324.4	
			6	323.1	
			7	322.6	
			8	323.0	
	15	1,787.4	1	298.0	
			2	297.4	
			3	298.0	
			4	298.2	
			5	298.5	
			6	297.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6	1,488.0	1	298.9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98.1	
			3	298.3	
			4	298.3	
			5	294.4	
	17	624.2	1	311.6	
			2	312.6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86,537.2	12필지	486,537.2		
B-1	–	86,809.3	1	27,370.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2	28,207.0		
			3	31,232.2		
B-2	–	88,447.7	1	46,020.2		
			2	42,427.5		
B-3	–	79,372.5	1	79,372.5	제2종일반주거지역	
B-4	–	59,903.4	1	34,252.6		
			2	25,650.8		
B-5	–	26,535.5	1	26,535.5	제3종일반주거지역	
B-6	–	55,901.2	1	55,901.2		
B-8	–	89,567.6	1	48,917.3		
			2	40,650.3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1,002.8	18필지	11,002.8	
근생1	-	1,521.5	1	485.8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2	534.3	
			3	501.4	
근생2	-	1,442.0	1	494.5	
			2	493.0	
			3	454.5	
근생3	-	2,062.2	1	492.2	
			2	523.9	
			3	523.8	
			4	522.3	
근생4	-	1,837.8	1	527.3	
			2	480.9	
			3	465.0	
			4	364.6	
근생9	-	4,139.3	1	1,010.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단, 근생10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2	1,071.8	
			3	1,064.3	
			4	992.9	

라. 상업 · 업무용지(변경없음)

1)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56,950.9	42필지	56,950.9	
상1	–	8,255.9	1	1,899.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1, 2획지), 상5, 상6은 공동개발 권장
			2	1,724.7	
			3	1,724.1	
			4	1,514.5	
			5	697.0	
			6	696.5	
상2	–	2,156.7	1	2,156.7	
상3	–	4,539.5	1	749.2	
			2	756.1	
			3	1,517.0	
			4	1,517.2	
상4	–	3,549.7	1	1,268.0	
			2	507.6	
			3	508.3	
			4	1,265.8	
상5	–	4,861.4	1	2,014.0	
			2	2,847.4	
상6	–	7,832.8	1	4,138.7	
			2	2,486.0	
			3	1,208.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7	-	1,688.4	1	844.2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0, 상12(3, 4획지)는 공동개발 권장
			2	844.2	
상8	-	5,097.1	1	1,267.0	
			2	1,266.4	
			3	1,265.1	
			4	649.1	
			5	649.5	
상9	-	4,236.3	1	706.1	
			2	708.8	
			3	1,412.8	
			4	1,408.6	
상10	-	3,045.6	1	1,526.3	
			2	1,519.3	
상11	-	6,190.4	1	777.2	
			2	772.8	
			3	1,546.3	
			4	1,547.4	
			5	1,546.7	
상12	-	5,497.1	1	1,375.3	
			2	1,373.9	
			3	1,373.8	
			4	1,374.1	

2) 특화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5,157.0	31필지	35,157.0	
특상1	–	6,290.9	1	1,231.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연접한 2개획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1,277.6	
			3	1,269.1	
			4	1,244.3	
			5	1,268.1	
특상2	–	4,248.9	1	1,091.9	
			2	1,050.5	
			3	1,037.1	
			4	1,069.4	
특상3	–	2,344.7	1	1,189.9	
			2	1,154.8	
특상4	–	3,765.7	1	1,318.4	
			2	1,284.4	
			3	1,162.9	
특상5	–	7,624.8	1	1,025.1	
			2	1,007.4	
			3	1,038.5	
			4	1,078.6	
			5	1,118.5	
			6	1,158.7	
			7	1,198.0	
특상6	–	3,453.6	1	1,197.6	
			2	1,150.7	
			3	1,105.3	
특상7	–	7,428.4	1	1,030.1	
			2	1,020.7	
			3	1,021.3	
			4	1,034.0	
			5	1,110.5	
			6	1,165.0	
			7	1,046.8	

3)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19,032.4	68필지	319,032.4	
업1	-	113,042.8	1	87,705.9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25,336.9	
업2	-	28,855.6	1	28,855.6	
업3	-	4,431.4	1	2,230.6	
			2	2,200.8	
업4	-	5,742.5	1	2,352.5	
			2	3,390.0	
업5	-	24,560.4	1	11,692.0	
			2	6,810.6	
			3	2,878.4	
			4	3,179.4	
업6	-	5,252.3	1	2,651.7	
			2	2,600.6	
업7	-	13,188.0	1	3,037.9	
			2	3,069.5	
			3	4,294.4	
			4	2,786.2	
업8	-	10,876.1	1	4,158.2	
			2	4,048.7	
			3	1,337.1	
			4	1,332.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9	-	9,978.3	1	4,005.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3,748.9	
			3	1,099.7	
			4	1,123.9	
업10	-	5,780.7	1	1,175.3	
			2	1,108.3	
			3	3,497.1	
업11	-	5,929.8	1	1,152.9	
			2	1,126.7	
			3	3,650.2	
업12	-	6,543.9	1	2,163.2	
			2	2,202.8	
			3	2,177.9	
업13	-	12,494.7	1	12,494.7	
업14	-	13,465.0	1	6,727.5	
			2	6,737.5	
업15	-	12,418.2	1	2,274.5	
			2	2,000.2	
			3	3,518.9	
			4	2,332.3	
			5	2,292.3	
업16	-	12,599.1	1	3,285.2	
			2	4,611.7	
			3	2,369.9	
			4	2,332.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17	-	3,182.5	1	784.6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792.9	
			3	793.4	
			4	811.6	
업18	-	3,180.5	1	815.2	
			2	793.7	
			3	792.6	
			4	779.0	
업19	-	6,025.1	1	2,948.3	
			2	1,542.5	
			3	1,534.3	
업20	-	7,698.2	1	2,706.2	
			2	2,385.8	
			3	1,285.0	
			4	1,321.2	
업21	-	2,712.8	1	2,712.8	
업22	-	2,589.2	1	1,286.8	
			2	1,302.4	
업23	-	5,435.6	1	2,724.8	
			2	2,710.8	
업24	-	3,049.7	1	1,513.7	
			2	1,536.0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교육시설

가) 유치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271.5	2필지	3,271.5	—
유1	-	1,345.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	1,345.5	
유9	-	1,926.0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9	1,926.0	

나) 초등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계		15,076.0	1필지	15,076.0	
기정	초1	-	15,076.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	15,076.0	

다) 고등학교(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계		18,013.5	1필지	18,013.5	
변경	계		21,110.5		21,110.5	증) 3,097㎡
기정	고1	-	18,013.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18,013.5	
변경	고1	-	21,110.5		21,110.5	증) 3,097㎡

2)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계		42,646.1	2필지	42,646.1	
기정	문2	-	20,249.3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	20,249.3	
기정	문3	-	22,396.8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	22,396.8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2,553.5	10필지	22,553.5	
주1	-	2,540.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4	2,540.8	
주2	-	2,171.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1	2,171.8	
주3	-	2,000.6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7	2,000.6	
주4	-	2,868.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8	2,868.6	
주5	-	1,396.7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77	1,396.7	
주6	-	3,248.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	3,248.5	
주7	-	2,396.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	2,396.4	
주13	-	1,947.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5	1,947.4	
주14	-	1,876.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6	1,876.1	
주15	-	2,106.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6	2,106.6	

4) 주유소(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317.8	1필지	2,317.8	
주유1	-	2,317.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89	2,317.8	

5)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537.9	1필지	2,537.9	
오1	-	2,537.9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0	2,537.9	

6)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44.0	1필지	144.0	
전1	-	144.0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6	144.0	케이블헤드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13m이하)
		허용 가구수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계획시 4가구 이하)
		기타 용도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지하층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지하1층 : 주거 또는 교육용도 외 허용되는 모든 시설. (단, 욕실 및 취사시설이 없는 취미실, 서재 등의 설치는 허용) - 지하2층 이하 : 기계실 및 주차용도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전체를 기계실 및 주차용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타용도의 설치를 금지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해 허용하되, 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를 불허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는 타용도로 일체 전환할 수 없다. •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높이	• 건축물의 1층 전체를 높이 2.5m 이하의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용적률 및 최고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단독주택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지붕으로 계획 시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평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평지붕 구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지붕형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관적으로 주변의 경사지붕과 조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 한옥주택의 경우,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한식지붕에는 전통경관형성 및 지붕틀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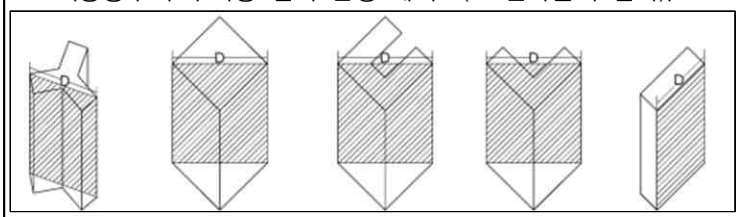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담장, 대문, 계단 - 대문 설치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공원에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한옥 주택의 경우 한국전통디자인을 포함하는 담장으로 조성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가로형간판 또는 소형돌출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다. - 도청사 주변의 단독주택 용지는 자연재료 사용 및 주상호 한글 표기를 권장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교통처리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 - 차량 진 ·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획지 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예외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 - 주거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당 2대 이상' 과 관련 시 · 군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관련 시 · 군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용도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으로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는 「주차장법」 및 관련 시 · 군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B1~B6, B8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조업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나-2〉에 따른다.
		용적률		
		높 이		
		주택규모 및 세대수		• 각 획지별 주택규모는〈별표 3-나-2〉를 따른다. • 각 획지별 세대수는 〈별표 3-나-2〉를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직각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3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4항’ 의 지침을 따른다. • “층수제한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5항’ 의 지침을 따른다. • “포인트주거동 배치”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6항’ 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통경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 제1항’ 의 지침을 따른다. • “차경축”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 제2항’ 의 지침을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획지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또는 “어귀마당” 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 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나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B1~B6, B8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높이의 2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옹벽 인접 주거동 조성 예시〉  •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에는 6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 2층 이하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이하 '건축물의 길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축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공동주택 주거동 길이 산정 예시도(D=건축물의 길이)〉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호수 및 주거동 길이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0층 이하 부분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1층 이상 : 4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 11층 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주거동 길이제한〉 〈주거동 길이 적용 예시〉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B1~B6, B8	형태 및 외관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단지는 8호) 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의 규정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구릉지형을 활용한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 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결정도상에 지정된 어귀마당의 진입부 및 연도형 배치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 의 지침을 따른다.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B1~B6, B8	대지내 공지	• 공동주택용지 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주요 오픈스페이스와 주변 공원녹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차경축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와 자유로운 연계를 위하여 결정도의 차경축의 선형을 참고하여 시점부와 종점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 결정도에 별도의 차경축이 지정되지 않은 블록 내 획지의 경우에는 단지와 단지 및 공원녹지와의 소통을 위하여 "어귀마당", "단지 내 보행출입구" 및 인접 공원녹지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1개 이상 조성한다. • 공공보행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어귀마당”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2조 제5항’ 의 지침을 따른다.
		교통체계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진·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 · 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교통체계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보금자리주택법령」에서 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지상 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네트워크	• “차경축”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5조 제2항’ 의 지침을 따른다. • “단지내 보행출입구”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 의 지침을 따른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별표 3-나-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

필지번호	획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호)	평균주택규모(㎡)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508,817.1	8,757					
A-1	1	60㎡이하	22,279.9	499	82	18	40	190	임대(최고층수)
B-1	1	60㎡~85㎡이하	27,370.1	537	112	22	40	220	임대
	2	60㎡~85㎡이하	28,207.0	554	112	22	40	220	임대
	3	60㎡~85㎡이하	31,232.2	613	112	22	40	220	
B-2	1	60㎡~85㎡이하	46,020.2	78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2,427.5	719	112	18	40	190	
B-3	1	60㎡~85㎡이하	79,372.5	1,133	112	15	40	160	
B-4	1	60㎡~85㎡이하	34,252.6	489	112	15	40	160	
	2	60㎡~85㎡이하	25,650.8	366	112	15	40	160	
B-5	1	60㎡~85㎡이하	26,535.5	450	112	18	40	190	
B-6	1	60㎡~85㎡이하	55,901.2	1,098	112	22	40	220	
B-8	1	60㎡~85㎡이하	48,917.3	83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0,650.3	689	112	18	40	190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생활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근생1~4, 근생9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2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	•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
			• 1층의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해당블록	• 근생 1~8	• 근생 9
근린생활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근생1~4, 근생9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근생11~13)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의 설치 시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의 지침을 따른다.
근린생활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근생1~4, 근생9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내에 수목을 활용한 차폐를 고려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체는 가급적 전면보도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과 특수성이 있는 포장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 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 진·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 출입구는 필지 당 1개소만 허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라.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6">상업
시설

(일반
상업
지역)</td><td rowspan="6">상
1~12</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colspan="2">해당블록</td><td>• 상1~4, 상7~12</td><td>• 상5~6</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80% 이하</td><td>• 8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700% 이하</td><td>• 700%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2">높 이</td><td>• 최고층수 20층 이하
(최고높이 : 85m 이하)</td><td>•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고높이 : 65m 이하)</td></tr>
<tr><td colspan="2">• 최저층수 3층 이상
• 상업지 중앙부 녹지축방향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 자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화상업시설 (근린상업지역)	특상1 ~ 특상7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 1층부 보행친화형용도(카페·베이커리 등 식음시설, 서적·기념품·의류 등 소매점)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최고높이 : 22m 이하)
일반업무시설 (준주거지역)	업3, 업4 -1, 업6 ~12, 업14, 업15- 4~5 업16~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24,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업무시설
			기타	•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블록		•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공공업무시설 (준주거지역)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내지 마목,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이전기관의 업무시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업무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내지 아목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공공업무시설
			기타	•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
		해당블록		•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상업시설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1~상12 업1~업24 특상1~특상7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에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형태 및 외관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한국적 전통 디자인' 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의 지침을 따른다.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상업시설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1~상12 업1~업24 특상1~특상7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 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기타	• 상업시설용지 중 상1(1, 2획지), 상5, 상6, 상10, 상12(3, 4획지)는 광로변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 업무용지2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단, 제2행정타운(업1~업24) 내 업무시설은 30%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지2 내에 임상양호지를 존치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유1, 9	용도	허용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기타	• 보육시설 및 학원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 최고높이 : 4층 이하
학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자연 녹지역)	초1; 고1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기정 : 50% 이하 •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용적률		• 기정 : 200% 이하 •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이하
		높 이		• 기정 : 최고높이 : 5층 이하 •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4층이하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 학교	유1, 9 / 초1, 고1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자연 녹지 지역)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학교 및 유치원 :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1)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시설 (일반 상업 지역)	문2~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건축물 1층부는 공공지원기능 및 라운지·카페 등 시민에게 개방된 보행친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함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8층 이하(최고높이 : 40m 이하)

2)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용도	허용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주 6~7 (일반상업지역)	• 주 5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7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18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최고높이:27m이하)	• 3층 이하 (최고높이:15m이하)
		용도	허용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 종교시설 • 운수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주 1~4 (준주거지역)	• 주 13~15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25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 (최고높이:23m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높이:19m이하)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배치 및 건축선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3) 주유소(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자연녹지지역)	주유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4) 기타시설용지

가)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중계펌프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	오1	용도	허용	•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나) 전기공급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공급시설 (자연녹지지역)	전기1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 출입구	• “단지 내 보행출입구” 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에서 이동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 우선구조	• “보행자우선구조” 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해당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학교시설은 결정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구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 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구분	조성기준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Ⅳ.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근린공원3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1,343.9	128,246.9 (감 3,097)	4,418.0	4,422.4 (증 4.4)				395	
기반시설	소 계	3,445.7	3,450.1 (증 4.4)	3,445.7	3,450.1 (증 4.4)				2	
	도 로	3,445.7	3,450.1 (증 4.4)	3,445.7	3,450.1 (증 4.4)				2	
휴 양 시 설		105.2	105.2	105.2	105.2				10	
교 양 시 설		623.0	623.0	623.0	623.0				29	
편 익 시 설		139.1	139.1	139.1	139.1				2	
관 리 시 설		105.0	105.0	105.0	105.0					
녹 지		126,925.9	123,824.5 (감 3,101.4)	-	-				352	
공원시설율 (법정 40%이하)		기정		4,418.0 / 131,343.9 x 100 = 3.4%						
		변경		4,422.4 / 128,246.9 x 100 = 3.4%						
공원건폐율 (법정 10%이하)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31,343.9	128,246.9 (감 3,097)	4,418.0	4,422.4 (증 4.4)					395	
기반시설	소 계			3,445.7	3,450.1 (증 4.4)	3,445.7	3,450.1 (증 4.4)					2	
	도 로	전지역		3,445.7	3,450.1 (증 4.4)	3,445.7	3,450.1 (증 4.4)					2	
	가벽											2	
휴양시설	소 계			105.2	105.2	105.2	105.2					10	
	휴게쉼터	4개소		105.2	105.2	105.2	105.2					10	
		1-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15.3	15.3	15.3	15.3						
		1-2		34.3	34.3	34.3	34.3						
		1-3		21.3	21.3	21.3	21.3						
		1-4		34.3	34.3	34.3	34.3						
	앉음벽											4	
	파고라"B"											2	
	허리돌리기운동											1	
	양다리운동											1	
	옆파도타기운동											1	
	노젖기운동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 계			623.0	623.0	623.0	623.0					29	
	생태연못	2-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272.9	272.9	272.9	272.9						
	야생식물원	2-2		146.9	146.9	146.9	146.9						
	희귀식물원	2-3		203.2	203.2	203.2	203.2						
	플랜터											2	
	앉음벽											4	
	파고라"B"											1	
	마라톤운동											1	
	역기내리기운동											1	
	역기올리기운동											1	
	등허리근육풀기운동											1	
	원그리기운동											1	
	평의자											2	
	수목보호판											6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횃대"A"											5	
	횃대"B"											4	
편익시설	소 계			139.1	139.1	139.1	139.1					2	
	데크 전망대	5개소		139.1	139.1	139.1	139.1					2	
		3-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16.4	16.4	16.4	16.4						
		3-2		50.3	50.3	50.3	50.3						
		3-3		20.7	20.7	20.7	20.7						
		3-4		17.5	17.5	17.5	17.5						
		3-5		34.2	34.2	34.2	34.2						
	사각 정자											1	
	평의자											1	
관리시설	소 계			105.0	105.0	105.0	105.0						
	수로관	5개소		105.0	105.0	105.0	105.0						
		4-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58.9	58.9	58.9	58.9						
		4-2		7.8	7.8	7.8	7.8						
		4-3		5.5	5.5	5.5	5.5						
		4-4		19.9	19.9	19.9	19.9						
		4-5		12.9	12.9	12.9	12.9						
녹지	녹 지	전지역		126,925.9	123,824.5 (감3,101.4)							352	
	육각 정자											1	
	트랠리스											14	
	종합 안내판											1	

구분	시 설 명	부 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동)	건축물		공작 물 (기)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 면적 (㎡)	연 면적 (㎡)		
	등의자											10	
	피크닉 테이블" A"											3	
	통나무 세우기											2	
	통나무 더미											4	
	돌 무더기											2	
	디딤돌" A"											24	
	디딤돌" B"											225	
	디딤목" B"											66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2,208.0	3,445.7				
	변경				2,209.8 (증 1.8)	3,450.1 (증 4.4)				
기정	소로	3	1	3.3	29.1	96.0	진입로	산합리 1396	산합리 1396	
기정	소로	3	2	3.3	8.4	27.8	진입로	산합리 1396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3	2.8	5.1	14.3	진입로	산합리 1396	소로 3-1	
기정	소로	3	4	2.8	4.9	13.8	연결로	소로 3-1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5	2.8	12.7	35.5	진입로	산합리 1396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6	2.3	31.6	72.7	연결로	희귀식물원 2-3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7	2.3	14.2	32.7	진입로	산합리 1396	산합리 1396	
기정	소로	3	8	1.5	86.6	129.9	산책로	소로 3-12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9	1.5	473.2	709.8	산책로	진입데크 3-1	산합리 1396	
기정	소로	3	10	1.5	225.9	338.8	산책로	휴게쉼터 1-4	소로 3-9	
기정	소로	3	11	1.5	168.5	252.7	산책로	산합리 1396	소로 3-9	
기정	소로	3	12	1.5	669.5	1,004.2	산책로	산합리 1396	소로 3-9	
기정	소로	3	13	1.5	204.5	306.8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2	
기정	소로	3	14	1.5	273.8	410.7	산책로	산합리 1396	소로 3-12	
변경	소로	3	14	1.5	275.6 (증 1.8)	415.1 (증 4.4)	산책로	산합리 1396	소로 3-1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일부준공 인가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05.06.)로 최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5(2019.12.17.)호 및 제2019-17(2019.12.26.)호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이 일부준공(1-2단계) 되었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준공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옥산동)

3. 사업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면 적 : 3,823,499.3㎡(1단계 2,839,486.3㎡, 2단계 984,013㎡)

※ 금회 일부준공인가(1-2단계) 면적 : 64,246.2㎡

용도별	계	주택건설 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공공기반 시설용지
면적(㎡)	64,246.2	16,531.8	5,166.5	42,547.9

4. 준공일 : 2020. 2. 13.

5.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처분계획

처분대상토지 구분	1-2단계 면적(㎡)	처분 대상자 자격	처분시기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합 계	64,246.2	-	-	-	-
주택건설용지	16,531.8	실수요자	2014 ~ 2022	추첨 (이주자용택지)	관련규정에 따른 공급가격
근린생활시설용지	5,166.5	실수요자	2014 ~ 2020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기반시설용지	42,547.9	-	-	-	-

처분대상토지 구분	1-2단계 면적(㎡)	처분 대상자 자격	처분시기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도 로	13,951.4	관리기관	사업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주 차 장	3,111.0	실수요자	2014 ~ 2020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 원	3,468.3	관리기관	사업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완충녹지	2,668.8	관리기관	사업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학 교	19,303.4	교육청	사업준공시	수의계약	조성원가
가스정압시설	45.0	관리기관	사업준공시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공급토지의 위치, 공급규모, 면적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동 사항이 기본적인 처분계획승인 내용에 부합되는 때에는 별도의 처분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본 건에 준하여 시행함.

○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구분	수 량	면 적(㎡)	비 고
계		20,088.5	경산시로 무상귀속
도로	· W= 15.0 ~ 25.0M · L = 878M	13,951.4	도로부설시설물 포함
공원	· 공원 1개소 (지식13공원)	3,468.3	
완충녹지	· 지식 10녹지 : 2,668.8㎡	2,668.8	
상수도	· 생활용수관로 - 규모 = D=80 ~ 100 - L = 1,230M		도로에 포함

구분	수 량	면 적(㎡)	비 고
하수도(우수)	· 우수관로 - 규모 = D=450 ~ 900 - L = 1,182M · 우수맨홀 33개소		도로에 포함
하수도(오수)	· 오수관로 - 규모 = D=150 ~ 300 - L = 1,865M · 오수맨홀 38개소		도로에 포함

※ 관계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산업지구개발팀(053-550-1873) 및 경산지식산업개발(주)(053-802-5344)에 비치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